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676
결재일자	2016.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 주 무 관	민 방 위 팀 장	자 치 행 정 과 장	행 정 국 장
류승훈	代김강식	정정숙	06/02 오영수
협조			

2016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점검 및 정비계획

▢ 점검개요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15조2(점검)

○ 점검기간

- 동·직장민방위대 자체 점검: 2016. 6. 7.(화) ~ 6. 15.(수)

※ 구청 확인 점검: 2016. 6. 13.(월) ~ 6. 17.(금)

○ 점검 대상: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

-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물자 등

○ 점검반 편성: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 추진 방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로 최적 상태 유지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로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시설장비 현황관리의 실효성 제고 등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사항

해당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사업추진 유 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년)	
예산확보 사 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1,840천원(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 □ 비예산 사업	예 산 팀 협 조 ( )
이해관계인 유 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 자 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무 □	
홍 보 필 요 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 보도자료 : 유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2016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점검 및 정비계획

민방위 시설·장비를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상반기 점검·정비를 실시코자 함

Ⅰ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 2 (점검 등)

> 제15조의 2 (점검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6년 민방위 업무지침 (국민안전처)

-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점검 및 정비 계획〔민방위담당관-8290호 (2016. 5. 26.)〕

Ⅱ 추 진 방 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 시설 주변 환경정비 및 안내표지판 정리 등을 통한 주민 인지도 강화
- 실효성 없는 시설 (시설노후, 안전관리 문제시설 등) 지정해제 등 정비
- 화생방 장비·물자의 효율적인 정비·관리 등 (방독면 포함)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새올행정시스템 정비 등 시설장비 현황관리의 실효성 제고

Ⅲ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조사기준일: 2016. 5. 31.

○ 동·직장민방위대 자체 점검: 2016. 6. 7.(화) ~ 6. 15.(수)

○ 구청 확인 점검: 2016. 6. 13.(월) ~ 6. 17.(금)

일정	6. 13.(월)	6. 14.(화)	6. 15.(수)	6. 16.(목)	6. 17.(금)
대상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 도 1 동	상 도 2 동 상 도 3 동 상 도 4 동	대 방 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흑 석 동 사 당 1 동 사 당 2 동	사 당 3 동 사 당 4 동 사 당 5 동

□ 점 검 대 상 :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2016. 5. 31. 기준)

-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물자 등

□ 점 검 방 법 : 관리주체(동, 직장)에 의한 자율점검 실시 후, 구에서 확인점검 실시

□ 점검반 편성: 자치행정과 민방위팀(담당 외 2명)

Ⅳ 세부 점검·정비 내용

주민대피시설

주요 점검사항

○ 실효성 없는 대피시설 합리적 정비(지정해제 등)

○ 대피소 안내표지판 점검·정비 및 주민홍보

○ 대피시설 점검 책임자 지정 및 시설관리 실태(내부환경, 즉시개발) 등

※ 기 실시한 전수조사와 중복된 사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

- **대피시설 수 적정규모로 조정**
  - ‣ 대피시설로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은 적극 해제 검토
- **시설 안내·유도 표지판 설치, 부착 위치 등 시설 주변 환경정비**
  - ‣ 위치 부적합 표지판 위치 재선정, 노후 표지판 교체, 해제시설 표지판 제거
  - ‣ 미부착 표지판 정비 및 안내표지판 교체 시 다국어 표지판 설치 등
- **시설 내 방송 청취시설 및 청결상태 확인, 대피시설 홍보 등**
  - ‣ 시설내부 관리실태, 방송청취 가능여부, 자체 정기점검 현황, 대피시설 홍보
  - ‣ 운영책임자 지정,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 물건 적재 여부 등

비상급수시설

주요 점검사항

○ 급수시설 확충 및 지정실태 (수질별 확보현황, 책임자 지정 등)
○ 시설 유지관리 (비상발전기 가동, 수질 및 시설점검 등)
○ 시설활용 및 홍보여부 (안내판 설치, 공공개방 등)

-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
  - ‣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율 저조지역은 비상급수계획과 연계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확보 추진
- **시설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 ‣ 새올행정시스템 내 주소정보 확인 및 정비
  - ‣ 주민이용에 적합한 환경 유지 (음수대 청결, 불량수도꼭지 교체 등)
- **노후배관, 수중모터 교체 및 자가발전설비 등 부대시설 확보·정비**
  - ‣ 발전기 미 보유 (고정식 설치불가 시 이동식 비상발전기 설치 가능) 또는 작동불능 시 대체방안 마련
- **수원 고갈 및 수질오염 등 부적합시설 지정해제 및 폐공**
  - ‣ 수질검사결과 주기적 (3회 이상) 불합격 등 개선 여지없는 시설 해제 등
- **수질과 수량이 적합하고 민원발생 소지 없는 민간시설 신규 지정 추진**

- **비상급수시설 정기점검 (분기1회) 실시 및 조치 여부**

▸ 비상사태 시 바로 음용이 가능한 수질상태 유지

【정기점검 시 주요점검 내용】

· 월별 1회 이상 관리책임자 (담당과장, 동장) 점검
· 모터펌프 등 월1회 이상 최소 15분 이상 작동 (수질오염 방지)
· 비상발전기 등 부대시설 작동여부 수시 확인 및 기록 유지
· 법정 주기에 의한 수질검사 실시 여부

민방위장비

주요 점검사항

○ 확보기준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 여부 / 부족 시 확보계획
○ 보관장소 적정여부 및 수량표시 등 현황판 정비 현황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장비 교체 추진 실적 등

- **장비 확보기준** (필수 6종) **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

▸ 민방위대별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 필수장비 6종에 대한 종류별 100%이상 확보 여부

* 지역대(통리대) 민방위장비 확보기준

장 비 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장 비 명	민방위대 규모별 기준
전자메가폰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지휘용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민방위장비 확보기준

장 비 명	민방위대원수						
	100명 미만	10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 확보기준 미충족 시 추가 확보계획 수립 여부 등

- **보관 장소 적정성 및 수량 등 현황 정비 현황**

‣ 각종 기자재 등 일반용품과 구분 여부 등 보관 장소 적정성 확인

‣ 장비별 수량 등 현황 관리 현행화 실적 (새올행정시스템, 현황판 등) 등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교체 추진**

‣ 장비·물품의 유효기간 및 마모·훼손 (밧데리 방전 등) 여부 확인 후 교체 등 정비

* 민방위장비 규격 및 내구연한

장 비 명	규 격	내구연한
전자 메가폰	출력30W 이상, 사이렌 기능보유	10년
지휘용앰프(축전지)	100W 이상, AC/DC 겸용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10년(4년)
응급처치세트	—	3년
환자용 들것	접이식, 안전벨트 장착	5년
휴대용조명등(건전지)	충전식, 건전지 사용 (미개봉 상태 보관 시)	10년(6년)
교통신호봉	AC/DC 겸용	10년

- **지역 및 직장대 장비보유율 제고를 위한 추진 노력 등**

‣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 독려 및 협조공문 발송 여부 등

※ 내구연한 (3 ~ 10년) 경과 장비도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비축 관리

※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이 현재 타 장비에 비해 비축율이 낮으나, 전시 등 비상사태 대비 100% 확보 추진

화생방 장비

주요 점검사항

○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보관 관리 상태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장비 폐기여부

○ 확보기준 대비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확보 실적 등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지침에 의한 장비 관리
  - ‣ 전용창고 확보 및 보관환경 (온도, 습도, 직사광선 등) 의 적합성
  - ‣ 현황판 및 장비 확보계획 등 작성 (최신화) 여부
  - ‣ 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시효기간 초과품 폐기 여부
  - ‣ 일반·한국형 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폐기
  - ‣ 탐지지, 제독용액, 피부제독제, 해독제 : '10년 생산품까지 폐기
- '16년 지역·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실적
  - ‣ 지역민방위대 : 상반기 내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여부 (집행률 및 구매수량 등)
  - ‣ 직장민방위대 : 일반방독면 구매 실적
- 자치구별 화생방 장비·물자 보유현황 등

【화생방 장비·물자 확보기준】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80% 확보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100% 확보
·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 편제 대비 100% 확보

시설장비 확충 및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

주요 점검사항

○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독면 확충 추진실태
○ 조기집행 실적, 집행 부진 시 사유 등 파악 후 개선 조치
○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현황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 등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 여부
- 조기집행을 위한 집행계획 대비 예산 집행실적 확인
  - ‣ 방독면 계약 및 구매 여부, 예산집행 실적, 집행부진 사유 파악 및 개선 등
-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지침 내 시설기준 준수 (화생방장비 국가인증제품 구입 등)
- 각 시설·장비별 현황 새올행정시스템 현행화 철저 등

Ⅴ 행 정 사 항

▢ **공통사항**

- 민방위대별 자체점검 실시계획 수립 및 정비
- **점검(정비) 결과 제출** ’16. 6. 15 (수)까지

※ 자료 제출 시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일치토록 작성 제출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17년 민방위장비 예산 반영 예정

▢ **지역(동) 및 직장민방위대**

- 동(지역민방위대): 〔붙임1〕 제출
- 직장민방위대 : 〔붙임2〕 제출

붙임 1. 민방위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결과보고 서식 1부.

2. 민방위 장비 점검표(직장대). 끝.